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일: 2012년 6월 22일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 05. 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 06. 2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LACKROCK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상세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 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명칭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9693)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9694	29696	29697	29698	29699

2. 모집예정기간:

-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6. 집합투자업자:

BLACKROCK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가. 회사 개요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빌딩 23층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05.14. 블랙록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주) 설립 ▪ 2008.07.11. 블랙록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 허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규약 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국내주식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국내채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단,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금리스왑거래에 한함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국내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국내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금리스왑거래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정식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 요약]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라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6년 2월 2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비교지수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

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BGF US Dollar Reserve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정식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다른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JP Morgan Asia Credit Index”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

비교지수	상세설명
JP Morgan Asia Credit Index	1999년부터 JP Morgan Chase & Co. 에서 발표하는 아시아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액면금액 USD 1.5억 이상이고 잔존만기 1년 이상인 달러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채권지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라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6년 2월 2일 BGFs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운용전략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시아 지역내 분산투자: 주로 아시아 지역(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분산투자 ② 유동성이 높은 채권 위주의 종목선정: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유동성이 높은 아시아 채권의 순환매매*를 통해 수익창출 ③ 시장트렌드 포착을 통한 자산배분: 리서치를 통해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변곡점을 포착하여 펀드 내의 리스크 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창출 ④ 블랙록 내부 리서치를 통한 추가수익기회 발굴: 블랙록 내부 리서치를 중심으로 추가수익기회 발굴 <p>*순환매매: 증권 시장에서 매매 대상을 집중적으로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는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 가며 투자하는 매매방식</p> ▪ 운용 프로세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펀더멘탈 리서치를 바탕으로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을 사용하여 지역별 또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각 시장의 상황과 전망에 따라 투자 국가의 비중을 조절 ② 업종과 개별 채권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상대적 가치분석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주요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p>③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p> <p><추가수익 창출 전략></p>
비교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BGF US Dollar Reserve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 유동성이 높고 잔존만기가 짧아 투자위험이 낮은 미국 달러표시 단기우량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p>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피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s)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고수익증권위험</p>	<p>고수익증권 및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지는 미평가 증권(보통 "정크본드"라 함)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증권은 발행인의 원리금 상환 지속 능력에 있어 매우 투기성이 큰 증권으로 여겨지며, 경기 하락이나 금리 상승기에는 고수익증권 시장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고수익증권을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인이 원리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펀드는 전액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금리변동위험</p>	<p>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추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p>

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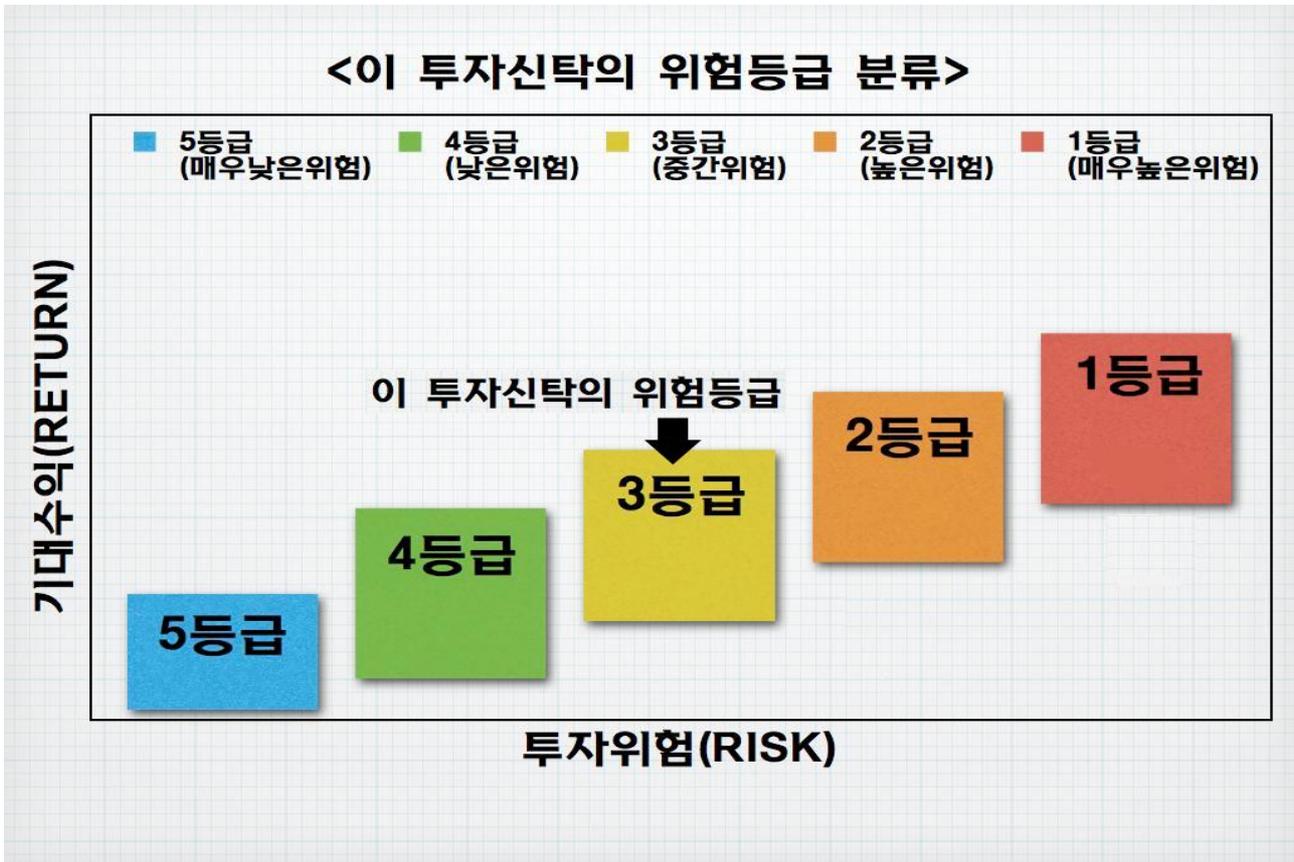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헤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식투자설명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청약연기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당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중간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채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세부내용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상 주식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상 주식에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상 주식에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투자신탁 • 장내차익거래용 파생상품투자신탁 • 원금보존추구형으로서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하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상 국공채를 비롯한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회사채,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계약상 국공채 및 MMF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

- 주 1) 상기 예시는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블랙록자산운용(주) 내부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예시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 3)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동비율은 실제 편입비율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4)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재간접형구조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당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적용하여 투자대상의 비율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위험등급을 분류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2.05.3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자산 규모	
조동혁	1963년	상무	18개	5,147억 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9년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팀(Portfolio Management Group)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10.09.08 ~ 2011.09.07				2010.09.08 ~ 2011.09.07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	1.87				1.87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A)	2.09				2.09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C)	1.69				1.69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C-e)	1.83				1.83
비교지수	4.32				4.32

- 주 1) 비교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010.09.08 ~ 2011.09.07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	1.87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A)	2.09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C)	1.69				
아시아타이거(채권-재간접)(H)(C-e)	1.83				
비교지수	4.32				

- 주 1) 비교지수: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
 2)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부담비율(연간)		부담시기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I 수익증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이내 ^(주1)	-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2012.09.21. 까지 환매청구 시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2012.09.24. 이후 환매청구 시	없음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전환 수수료	-	-	-

주 1) 종류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부담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w	종류I	
집합투자업자 보수	0.3900	0.3900	0.3900	0.3900	0.39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6000	1.0000	0.8500	0.0200	0.3000	
신탁업자 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50	0.0250	0.0250	0.0250	0.0250	
기타비용 ^(주1)	0.0210	0.0172	0.0200	0.0172	0.0172	사유발생시
총보수 비용 ^(주2)	1.0760	1.4722	1.3250	0.4922	0.7722	-
합성 총보수 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 비용 (0.31%) 포함) ^(주3)	1.3860	1.7822	1.6350	0.8022	1.0822	-
증권거래비용 ^(주4)	0.0299	0.0304	0.0282	0.0304	0.0304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 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0.09.08.~2011.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w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0.31%(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0.31%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w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여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0.09.08.~2011.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w 및 I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7%로 가정) 포함]	211	516	852	1,850
종류 C 수익증권	181	571	1,002	2,280
종류 C-e 수익증권	166	524	919	2,092
종류 C-w 수익증권	83	262	460	1,047
종류 I 수익증권	111	351	615	1,399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 종류 A와 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 개인15.4%(주민세 포함) - 일반법인 14%	이익을 지급받는 날

주 1)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①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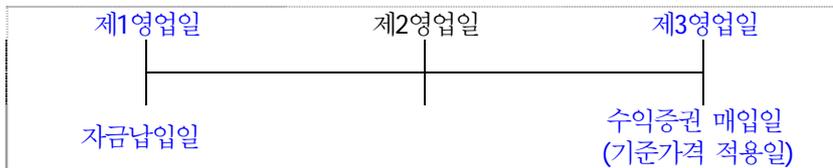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②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종류 A (협회코드: 29694)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협회코드: 29696)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협회코드: 29697)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 C-w (협회코드: 29698)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종류 I (협회코드: 29699)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 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10.09.08.~2011.09.07.)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20110907		-
I. 운용자산	13,407,149,249		
증권	12,663,637,296		
현금 및 예치금	743,511,953		
II. 기타자산	693,921,266		
자산총계	14,101,070,515		
II. 기타부채	459,264,136		
부채총계	459,264,136		
I. 원본	13,393,604,946		
II. 수익조정금	296,987,371		
III. 이익잉여금	-48,785,938		
자본총계	13,641,806,379		
I. 운용수익	300,008,836		
이자수익	20,802,904		
매매/평가차익(손)	104,889,793		
기타이익	174,316,139		
II. 운용비용	348,794,774		
관련회사보수	343,702,406		
기타비용	5,092,368		
III. 당기 순이익	-48,785,938		
* 매매회전율 ^(주1)	0		
* 매매수수료	8,119,30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